

---

## 제2부

# 주요 언론조정사례

---

### 제3장

###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 제3장

#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 추후보도 사례 1

### 2023서울조정1008·1009/1010·1011 각 추후·손배 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 (추후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열람차단)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아동을 학대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추후보도하고, 유감표명도 조정합의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재활센터의 원장은 다른 아동 학부모에게 피해 아동 가족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 앞서 청각장애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전제 사실을 누락하고, 피해 아동 할머니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하여 신청인들의 명예와 센터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며 추후보도와 각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무죄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게재를 수용하였으며, 금전배상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사과를 원한다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는 무죄판결에 따른 추후보도 게재와 피신청인 측의 유감표명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 다른 9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거나, 추후보도를 단독으로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추후보도, 열람차단,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또는 취하(추후보도, 열람차단)로 종결되어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재활센터 교사 4세 장애아동 폭행 혐의 무죄 선고

**본문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재활센터 교사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아이의 손등을 때리고, 입술을 짹 누르는 등의 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무죄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XX년 X월 XX일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홈 > 사회 섹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추후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피신청인 유감표명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본 합의로써 유감을 표명한다.

### 열람차단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가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 한다.

추후보도 사례 2

2023부산조정14·15·16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 및 반론보도)

노동조합 대표에 입후보한 신청인이 과거 보조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적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성추행 무죄 판결과 신청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추후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노동조합 지역본부 의장에 입후보한 A 씨가 이전 의장 재직 당시 시 보조금 1억 7,117만 원을 편취하고,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개인적으로 사용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후 A 씨는 횡령 피해액 중 1,740만 원을 시에 반납하고 3,456만 원을 노조 앞으로 변제 공탁하여 보석 결정을 받았으며, 향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A 씨는 몇 년 후 공탁금을 자신의 부인 계좌로 출금하여 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여직원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침입으로 체포되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시 보조금 편취의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신청인의 95%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므로 보도 내용은 왜곡이라고 했다. 공탁금을 부인 계좌로 인출한 것도 의장단 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사항이며, 인출된 공탁금은 조직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이 된 사안으로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의장 선거에 악영향을 받았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할 의도는 없었으며 취재 요청 문자에 답변이 없어 반론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와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기사를 구성하였으나 신청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재판 결과는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중재부는 기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등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성추행’ 등의 단어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의혹 보도 시에는 취재 대상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판결과 신청인 의견 일부를 반영한 추후 및 반론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지역본부 제XX대 의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X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중략]**

X일 ○○○○ △△본부 노조원과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 등에 따르면 A 후보는 의장 재직시절 직원 X명을 허위로 등록해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 20XX~20XX년 시 보조금 1억 7,117만 원을 편취했다. 또 해외연수 보조금 등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000여 만 원을 여행사 등에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20XX년 X월 징역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뒤 그는 횡령 피해액 중 1,740만 원을 시에 반납하고 3,456만 원을 노조 앞으로 변제공탁하는 것으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어 20XX년 X월 그는 걸어둔 공탁금을 출금해 자신의 부인 계좌로 빼돌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요죄, 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A 후보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재판을 받기도 했다. 피해 여직원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 주거침입(현행법)으로 체포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A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수억 원 횡령에 성추행까지”...○○○○ △△ 의장 후보자 논란> 관련

**본문내용:** 올해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 △△지역본부 의장 선거 후보자인 A씨가 20XX~20XX년 의장 재직 시절 시보조금 1억 7,117만 원을 편취했으며, 20XX년에는 공탁금을 부인 계좌로 빼돌리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1억 7,117만 원 편취 관련 재판 결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관련 혐의들은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것이며, 공탁금은 ○○○○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적법하게 인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뉴스통신 홈페이지 △△·□□ 섹션에 추후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도문을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추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박스·음영·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추후보도 사례 3**

**2023서울조정2781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후속보도)

새총과 쇠구슬로 동료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신청인이 유죄판결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항소심 무죄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게재하여 취하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으로 직장 동료의 차량을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1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긴 했으나 해당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추후보도문 대신 무죄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후속보도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취하로 종결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1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취하(추후보도, 후속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지법 형사4단독 △△△ 부장판사는 20XX년 X월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XX고단XXXX).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일 오전 XX시 XX분경 ○○시 □□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해 승용차의 앞 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해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판사는 피고인이 전문가용 새총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20XX년 X월경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한 점, 이후 한 교사에게 요청해 쇠구슬을 받아갔고, 차량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철(Fe) 성분이 검출된 점, 학교 옥상은 후관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고 당시 학교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파손 부위가 4군데라는 것을 학교에 알리기 전에 피고인은 한 교사에게 '파손 부위가 4군데이던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게재보도문

#### 후속보도문

**보도제목:** ○○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본문내용:** ○○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 부장판사, ☆☆☆·▽▽▽ 판사)는 20XX년 X월 XX일 □□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XX노XXXX).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그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XX년 XX월 X일 오전 XX시 XX분경 해당 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해 승용차 앞 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지방법원 20XX. X. X. 선고 20XX고단XXXX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도XXXXXX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새충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XX. X.경 새충을 구매하기는 했으나 그 새충은 자신의 처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버렸다'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네 주민 A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가 20XX. X. 이전에 새충을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아가 B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새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무렵 새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달리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새충을 들고 다니던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장소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새충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새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승용차의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과학교사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철(Fe)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다. 더욱이 미세증거 감정에서도 위 파편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이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의 성분과 동일한지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간 쇠구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된 시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옥상 아래에 위치한 후관 3층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이고, 당시 옥상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의 계단 등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피고인이 옥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후관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3층에서 내려오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 사건 학교의 3층에는 5학년 교실, 연구실, 컴퓨터실, 상담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에 옥상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학교의 옥상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무렵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장소로

### 제3장

####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정되는 곳 및 그 인근 등에서 범행도구 등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동기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